

제323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서

(김재진 의원)

2024. 4.

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93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산사태·사방’에 대한 업무나 학식, 경험 등을 자격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의 간사 또한 ‘산사태’에서 ‘산사태·사방’으로 업무 범위를 추가하는 것이므로 동의하며,

기타 용어를 정비하여 개념 및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국 검토의견은 원안동의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